

6. 학생홍보물게시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의 학문적 분위기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단체가 홍보물을 게시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홍보물이라 함은 학생지원처장으로부터 홍보물 제작(발간) 및 배부 허가를 받고 교내의 게시장소에서의 현수막 및 게시물을 말한다. (2019.2.8.개정)

제3조(홍보물 게시범위)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생 및 학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2020.4.21. 개정)
2. 본교 행사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행하는 행사

②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에 준하는 행사

2. 학과, 학년단위 및 학생활동반(동아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020.4.21. 개정)

③ 외부단체 행사를 위한 현수막의 게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게시물의 게시는 외부단체 대표자의 의뢰원을 지참하고 홍보물에 검인을 받은 단체에 한하여 학생지원처장이 허가할 수 있다. (2019.2.8.개정)

④ 본교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고교동창회, 지방학우회)이 친목행사를 위하여 연고가 있는 특정 교수로부터 행사지도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학생지원처장은 게시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19.2.8.개정)

제4조(홍보물 제작(발간) 및 배부원 제출절차) 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홍보물 제작(발간) 및 배부 허가원에 홍보물 내용원고를 첨부하여 학생지도 담당교수와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 (2019.2.8.개정)

②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의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한다. (2020.4.21. 개정)

③ 학생지원처장은 위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허가원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하며, 허가된 단체에 대하여는 허가서를 발부한다. (2019.2.8.개정)

④ 허가서를 발부 받은 단체는 홍보물을 제작한 다음 학생지원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한다. (2019.2.8.개정)

제5조(홍보물 제한매수)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은 전체행사에 대하여 1매에 한한다.

②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10매 이내
2. 학과 단위의 행사일 경우 6매 이내(2020.4.21. 개정)
3. 학과 또는 학생활동반의 행사일 경우 4매 이내(2020.4.21. 개정)
4. 외부단체 행사일 경우 2매 이내

제6조(홍보물 게시시간) ① 홍보물의 게시는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② 행사 주관단체의 대표학생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규격 및 색상) ① 현수막의 규격은 6.5m/1m로 하며 게시장소는 교내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② 게시물의 규격은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격 제9조 ⑧항에 준하며 게시장소는 교내 게시판에 한한다.

③ 현수막은 흰바탕 또는 청색바탕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홍보물에 사용될 글자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보호 및 책임) ① 학생이 허가를 얻어 게시한 홍보물은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및 동 제3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9조(대외홍보) 본교 학생행사를 타 대학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은 홍보물에 검인을 날인하고 타교 또는 외부단체 대표자에게 게시허가를 의뢰하는 의뢰원을 발부한다. (2019.2.8.개정)

제10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결의(재적위원 과반수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